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안 제41조의9)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함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3)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9(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나. 특별관리지역 이용료
다.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9(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 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관리지 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u><신 설></u>	제41조의9(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해제) ① ----- ----- ----제4항----- ----- ----- ----- ----.
②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 다.	②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 는 해제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서류를 갖추어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③ -----제4항----- ----- ----- ----- ----- -.
	<u><삭 제></u>

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나. 특별관리지역 이용료

다.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20